

# 정 관

전부개정 2015. 1. 1.  
일부개정 2016. 6. 16.  
일부개정 2016. 12. 30.  
일부개정 2017. 12. 29.  
일부개정 2018. 12. 28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명칭)** 이 법인은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이라 한다)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(약칭 KIHF)로 표기한다.

**제2조(목적)** 진흥원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,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(사무소 소재지)**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, 필요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4조(사업)**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
2.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
3.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
4.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
5. 다문화가족, 한부모가족,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
6.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
7. 「건강가정기본법」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,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

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

8.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
  9.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, 연구
  10.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 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
  11.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의 각 호 사업의 경비조달을 위하여 수익사업 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2장 임 원

**제5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① 진흥원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 <일부개정 2018.12.28.>

1. 진흥원 이사장(이하 ‘이사장’ 이라 한다) 1인
2. 상임이사 1인(상임이사는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한다.) <일부개정 2016.12.30.>
3. 비상임이사 13인 이하 <일부개정 2018.12.28.>
4. 감사 1인

② 이사장 및 양육비이행관리원장(이하 “상임이사”)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. <일부개정 2016.12.30.>

**제6조(임원의 임명)** 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와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. <일부개정 2016.12.30.>

- ②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으로 한다.
- ③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. <일부개정 2016.12.30., 2017.12.29.>

**제7조(임원의 임기)** 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<일부개정 2016.12.30.>

- ② 비상임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 기간으로 한다. <일부개정 2018.12.28.>
- ③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.

**제8조(임원의 신분 보장)** ① 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.

1.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2. 고의·태만·업무방해 또는 과실로 인하여 진흥원에 중대한 손실을 끼쳤을 때
3. 임원간의 분쟁·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
4. 신체 정신질환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 하였을 때

② 임원의 임기 중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, 여성가족부장관이 해임할 수 있다.  
<일부개정 2016.12.30., 2017.12.29.>

③ <본항삭제 2017.12.29.>

**제9조(임원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 단,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대한 예산·인사·조직에 있어서는 이행관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.

③ 감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감사기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,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.

**제10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** ①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대행한다. 상임이사가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을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. <일부개정 2016.12.30.>
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 <본항신설 2016.12.30.>

**제11조(임원의 보수)** ① 상임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보수규정에 따른다.

② 비상임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2조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·운영)** ① 이사장 및 상임이사, 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, 후보자와의 계약안에 관한 사항의 협의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진흥원에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·운영한다. <일부개정 2016.12.30.>

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임원의 겸직 제한)** 상임 임원은 그 직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다.

**제14조(임원의 결격사유)** ①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.

②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.

## 제3장 이 사 회

**제15조(이사회 구성)** ① 진흥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.

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. <일부개정 2016.12.30.>

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이사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, 이사장이 진흥원 직원 중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각급 부서장으로 정한다. <본항신설 2016.12.30.>

**제16조(이사의 기능)**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운영 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2.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편입 및 중요재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
4. 차입금 및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에 관한 사항
5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6. 직제·보수·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
7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8.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선임에 관한 사항
9. 이사장 및 임원 해임 건의에 관한 사항
10.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
11. 정관 및 주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
12. 기타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및 이사회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
**제17조(이사회회의 소집 등)**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와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각각 소집하고,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3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.

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. 다만, 이사장이 특별한 사유로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상임이사와 당연직 이사 순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<본항신설 2016.12.30.>

④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과 안건,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한 때에는 회의개최 전날까지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<일부개정 2016.12.30.>

⑤ 이사회는 법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. <일부개정 2016.12.30., 2018.12.28.>

⑥ 이사회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 다만,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. <일부개정 2016.12.30.>

⑦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일부개정 2016.12.30.>

**제18조(의결제척사유)** 이사회 안건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사는 재적이사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

**제19조(이사회회의 회의록)** 이사회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경과의 요지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규칙의 제정)** 이사회는 이사회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.

## 제4장 재산 및 회계

**제21조(재산의 구분)** ① 진흥원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
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며,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
1. 정부출연금 및 토지·건물 등의 부동산
2.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기증 받은 토지, 건물, 기타 물품
3. 기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

**제22조(재산의 관리)**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양도, 증여, 교환, 담보제공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토지 및 건물

2.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재산

② 진흥원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,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③ 양수, 기부채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진흥원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
④ 진흥원의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, 기타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23조(운영재원)** 진흥원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.

1.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

2.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

3. 개인·법인 또는 단체의 출연금·기부금 및 출연재산

4. 사업 수익금

5. 용역 수입금

6. 기타 수입금

**제24조(기금의 설치 및 관리)** ①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국가 및 공공단체로부터의 기금 출연금

2. 단체 또는 개인이 기부목적으로 출연하는 현금·물품·기타재원

3.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4. 기타 수입금

③ 기금은 진흥원이 관리 운영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**제25조(사업 및 회계연도)** ① 진흥원의 사업 및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
② 회계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③ 제4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민간 위탁사업의 경우 특별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한다.

**제26조(사업계획 및 예산서 제출)** 익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 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27조(출연금예산요구서의 제출)** 진흥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제6항에 의한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매년 작성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8조(출연금의 신청)** 진흥원은 출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별로 그 지급 신청서를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9조(결산서 제출)** 매 회계연도마다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,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공인회계사나 「공인회계사법」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.

**제29조의2(기부금품의 접수 및 공개)** ① 진흥원은 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은 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기부금품의 접수와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.

<본조신설 2016.6.16.>

**제30조(잉여금의 처리)**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거나 전년도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 충당하고,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본 재산에 편입하거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**제31조(계속비)**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**제32조(회계감사)** 감사는 예산의 집행 등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조직 및 직원

**제33조(조직)** ① 진흥원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둔다.

② 그 밖의 진흥원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34조(직원)** 직원의 인사, 보수, 복무규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.

- 제35조(자문위원회)** ① 진흥원은 제2조의 목적달성과 제4조의 사업 등에 관한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 <일부개정 2016.12.30.>
- 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## 제6장 보 칙

**제36조(정관의 변경)**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- 제37조(해산)** ① 진흥원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② 진흥원이 해산된 때에는 잔여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진흥원과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공익법인에게 기증한다.

**제38조(규정의 제정 등)** 이사장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제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규정을 제·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일부개정 2016.6.16.>

1. 직제 중 정원에 관한 사항
2. 임직원의 보수 및 기금에 관한 사항

**제39조(저작권의 귀속)** 진흥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권리는 진흥원에 귀속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연구물의 경우에는 저작권을 원저작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. <일부개정 2016.6.16.>

**제40조(준용규정)**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 <일부개정 2016.6.16.>

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양육비이행관리원에 관한 사항은 201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재산과 권리·의무 등의 승계) ①이 정관 시행 당시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(이하 “중전 진흥원”)에 속하였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진흥원이 이를 승계한다.

② 중전 진흥원의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.

## 부 칙<2016.6.16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16.12.30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17.12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<2018.1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정관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